

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대상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함.

3. 주요내용

[구미시 시립화장장 부지 매입]

1) 제안설명

- 우리시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명품도시에 맞는 선진장사문화 정착 및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공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시설을 조기 건립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 【취득재산】

○ 토 지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 77-1
- 면 적 : 70,800m²
- 기준가격 : 354,000천원(가 감정가 기준)

4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구미시 시립화장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옥성면 농소리 산77-1번지 (면적 70,800m²)를 354,000천원(가 감정가)으로 매입하는 건으로 지난 2012. 6월 입지 공개모집 후 2012년 10월 29일 최종 선정 부지가 결정되어 시립 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 하게 됨.

○ 검토결과

- 본 안건은

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,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의회 의결”사항입니다. 본 건의 대상 부지는 2012년 6월 화장장 입지 공개 모집,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10월 29일 구미시 시립화장장 추진위원회에서 “옥성면 농소2리로 최종 선정”되었으며, 화장의 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설화장장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 및 선진 장사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